

국교생 학원과의 백지화

94.9.28

당정, 유보결정

국민학생들에 대한 국어·산수 등 일반교과목의 학원과의 허용 방침이 백지화됐다.

교육부와 민자당은 27일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7월말 입법예고한 뒤 논란을 빚어온 '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'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인 국민학생들에 대한 학원과의 허용 조항의 신설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.

당정은 그러나 학원 설립을 등록제로 일원화하고, 학원수강료를 학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수강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·도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

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.

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에 초등교육 전공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. 김정곤 기자